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국회 상임위 보고 등〉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47호)

2026. 7.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에 대한 정부·국회의 검증 강화 (안 제14조의2신설)	2
2. 공공기관 자산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설치(안 제14조의3신설)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민규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4. 27.

다. 회 부 일 : 2026.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산 매각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감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산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 절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함으로써 공공기관 자산의 매각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공기관 자산매각에 대한 정부·국회의 검증 강화 (안 제1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자산매각 시 국회 상임위 사전 보고 및 동의 절차 신설 (안 제14조의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u>주무기관의 장의 승인 의무화</u>(안 제14조의2제1항) - 300억원 이상인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각할 경우 <u>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각계획을 사전에 보고</u>(안 제14조의2제2항) - 지분증권 매각 시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안 제14조의2제2항 단서) - 매각 예정가격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14조의2제3항).

개정안은 공공기관 자산 매각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매각 예정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매각 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자산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각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며, 매각 대상이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일반 자산보다 강화된 통제 절차를 적용함. 또한, 승인·보고 또는 동의를 받은 매각 예정가격을 감액하려는 경우에도 주무기관장의 재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자산 취득·처분을 이사회¹⁾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여 기관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관 통폐합·기능조정 및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²⁾,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자산 처분을 기관 중심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참고로, 정부는 2025년 12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및 공공기관 민영화 및 자산 매각 절차의 투명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사회¹⁾의 설치와 기능)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 5. 17.>

1.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이하 생략)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12. 27., 2025. 10. 1.>

② - ⑤ (생략)

[2025.12.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①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 개편

- 외부 전문가 중심 매각심사기구 설치
- 절차 강화
 - 300억 원 이상: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 사전보고
 - 50억 원 이상: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의결

② 헐값 매각 방지

-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예외 시 심의위원회 의결)
- 10억 원 이상 감정평가 시 협회 심사 의무화
- 수익매각 요건 정비

③ 민영화 절차 통제 강화

-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국회 사전동의 절차 도입

④ 매각 정보공개 확대

- 입찰정보 즉시 공개(온비드)
- 매각 결과(소재지·가격·사유) 공개
- 공공기관 온비드 사용 및 법령 준용 의무화

⑤ 공공 활용 우선 검토

- 민간 매각 전 지방정부·공공기관 활용 가능성 사전 검토
- 신산업·사회적경제·공공주택 등 공익적 활용 유도

자료: 기획재정부,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 12. 15.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의 매각 및 지분 매각에 대해 국회의 사전보고 및 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자산의 헐값 매각 및 불투명한 처분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민영화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국회의 사전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상 이사회 의결 및 민영화 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제도

가 이미 존재하는 점과, 현행법이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³⁾ 개별 자산 매각에 대해 국회의 사전보고 또는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없는지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시 처분계획서 작성 및 소속 장관과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82)가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으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 자산의 헐값·특혜매각 방지와 자산관리 및 매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자산매각 관련 의원안 비교]

서영교의원안	박민규의원안
○ 자산 처분시 처분계획서 작성 및 소속 장관과 국회 상임위 보고 등 -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 자산 처분 시 처분 필요성, 처분하려는 자산의 규모·명세, 가액을 담은 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의결 - 처분계획서는 이사회 의결을 받은 후 기획재정부 장관·주무기관의 장의 승인 필요 - 기획재정부 장관·주무기관의 장은 승인한 처분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처분계획서상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산 처분 전 처분계획서에 대한 국회 상임위 동의 필요	○ 자산매각 시 국회 상임위 사전 보고 및 동의 절차 신설 (안 제14조의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 의무화(안 제14조의2제1항) - 300억원 이상인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각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각계획을 사전에 보고(안 제14조의2제2항) - 지분증권 매각 시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안 제14조의2제2항 단서) - 매각 예정가격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14조의2제3항).

2. 공공기관 자산 정보공개 법적 근거 설치(안 제14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공공기관 자산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안 제14조의3) -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함.

개정안은 공공기관 자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자산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산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자산 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공공기관 자산정보는 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정보는 경영공시 또는 자산매각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자산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공개하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공공자산의 전체 규모, 보유 현황 및 활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 또한 제한되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개정안과 같이 공공기관 자산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공공기관 자산 현황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산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여 자산의 취득·보유·매각 등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4조의2(자산매각) ① 공공기관은 매각 예정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매각 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각계획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자산이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인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거나 동의를 받은 매각 예정가격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의

현행	개정안
<신설>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 보고 및 동의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자산 정보공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자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공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의처

02)6788-5151